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1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이상휘·최형두·이헌승

구자근 • 박성민 • 박준태

서일준 · 신성범 · 김형동

김태호 · 임종득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 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기존 제44조의2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 제44조의11제1항으로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등).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4조 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 오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약관 내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2항).
- 다. 약관상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3항).
- 라.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시의무 및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 작성·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함(안 제7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11(약관 명시의무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무) ①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에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44조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에 대한 판단기준
 - 2. 제1호 오용에 대한 신고제도 및 신고된 정보에 대한 공정·투명 ·신속 처리 절차
 - 3.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
 - 4.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 수익중지 · 해지 등 제재기준

- 5. 제4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
- ③ 제2항의 약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 방송통신위원 회에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7조(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규모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7.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

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 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 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 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한다. ⑥ (생략) (b)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11(약관 명시의무 및 보 고서 작성 · 제출의무) 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 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에 대한 판단기준 2. 제1호 오용에 대한 신고제도

 및 신고된 정보에 대한 공정

 •투명·신속 처리 절차

- 3.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

 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
- 4.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

 5. 제4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
 ③ 제2항의 약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
- 지디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모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작성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

제77조(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 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 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u>1.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u>

<신 설>

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작성・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 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 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 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을 산정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제공자의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공자의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

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규모 및 이용 자에게 미치는 영향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이행 여부
- 7.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 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 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 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 <u>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u>

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